##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43

발의연월일: 2020. 11. 25.

발 의 자: 강병원 · 김병기 · 맹성규

이동주・조정훈・강민정

아뉴진(비) • 전혜숙 • 이은주

서영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루어지며, 사용자가 기여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후에 기여금과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됨. 이 때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 계산 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체납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체납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부터 10년 이내에 체납보험료 중

기여금을 개별납부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여 가입기간의 2분의 1을 인정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가입기간 계산 방식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용자가 체납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본인이 체납보험료를 개별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기간전체를 가입기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당 연금보험료의월별 납부기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기여금의 개별 납부가 불가능함에 따라,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근로자가 적정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체납된 전체 연금보험료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 도록 하고,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의 2분의 1이 아닌 납 부기간 전체를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려 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51조).

#### 법률 제 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를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해당 체납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
- 2. 기여금과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입기간 계산 및 기본연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제3항 및 제5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연금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
산) ① (생 략)	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	②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내지 아니한 <u>기간의 2분</u>	<u>기간</u>
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	
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③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	
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	
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 공단에 낼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 ④ (생 략)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 제 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 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다
음 각 호의 금액을 60세(특수직
종근로자는 55세)가 되기 전까
지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
며, 해당 체납 기간을 가입기간
에 산입한다.
1.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기여금과 부담금을 합한 연
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
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
우에는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또는 연금
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
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51조(기본연금액) ①

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 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 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 1. (생략)
-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 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 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는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신 설>

<u>가.·나.</u> (생 략)

②・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l><li>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li><li>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li><li>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li></ul>
소득월액은 이 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u>나. • 다.</u> (현행 가목 및 나목 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